

독도 일문일답

Q6.조선 정부 쇄환정책 무엇?

조선 정부 울릉도관리 파견-> 울릉도 주민 본토 데려 살도록 함
-> '쇄환(刷還)정책'

정책 조선 정부 왜구침입 우려-> 채택 도서정책 하나, 울릉도 영유권 포기 의미x

출처:<https://dokdo.mofa.go.kr/kor/dokdo/faq.jsp>

독도 일문일답

Q7.일본 메이지 정부 독도 일본 영토 아님 공식 확인 「태정관지령」 (1877년)무엇?



1877년 3월 태정관 에도 막부 조선 정부 교섭(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 독도가 일본 소속 아님
확인 판단 “다케시마(울릉도) 일도(一島: 독도)건 본방(本邦, 일본)관계 x
명심”지시 내무성내림
-> 「태정관지령」

번역문

메이지 10년 3월 20일

별지 내무성 품의(稟議)동해 다케시마(울릉도) 일도(독도) 지적 편찬 건

이는 겐로쿠 5년(1692)조선인 섬(울릉도)들어옴

구 정부(에도 막부)조선국[문서] 주고받은 결과 -> 본방(本邦=일본)과는 관계x 들은 것 [내무
성이] 주장 이상, [내무성] 품 취지 들어 품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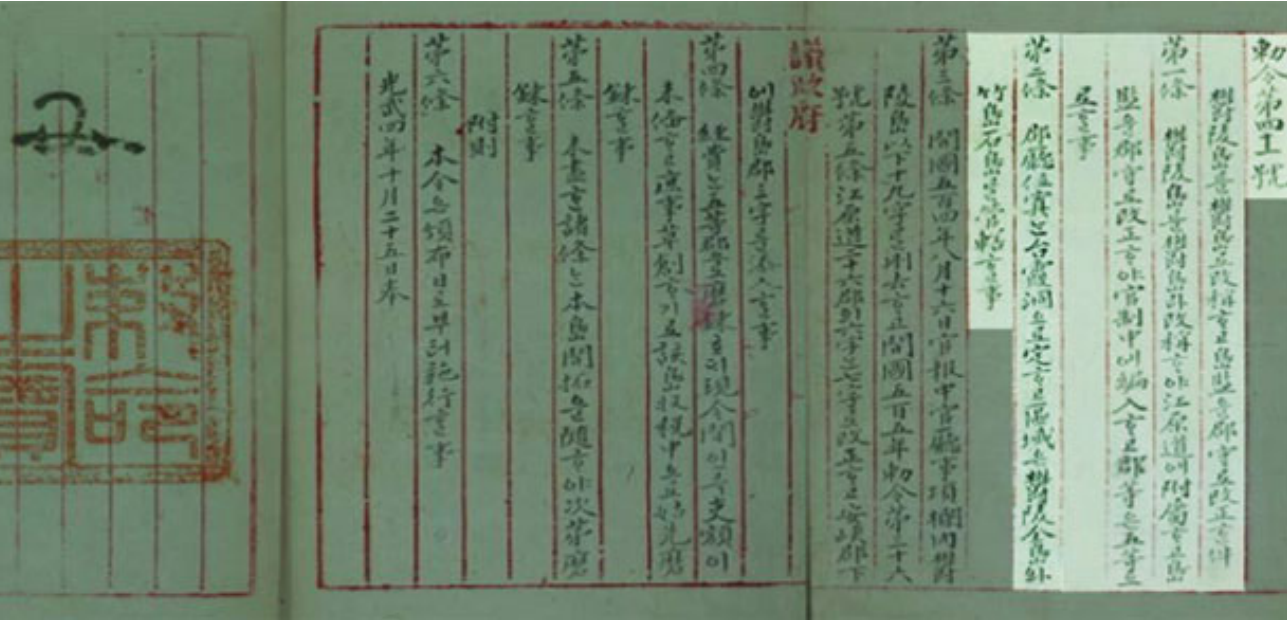
지령안(御指令按)

품의 다케시마(울릉도) 일도(독도)건 본방(本邦=일본) 관계 없음 명심

출처:<https://dokdo.mofa.go.kr/kor/dokdo/faq.jsp>

독도 일문일답

Q8. 1900년 대한제국 독도 울릉도 관할 명시 「칙령 제41호」 무엇?



1900년 10월 24일 대한제국 최고 행정기관 의정부 회의 “울릉도(鬱陵島) 울도(鬱島)개칭-> 도감(島監)군수(郡守)개정” 결정
결정 내용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의 재가->
10월 27일 「칙령 제41호」 관보 게재

칙령 제41호

번역문

(칙령 제41호) 울릉도 울도 개칭 도감 군수 개정
제1조 → 울릉도 울도라 개칭 강원도 부속, 도감 군수 개정 관제 편입, 군의 등급 5등 할 일
제2조 → 군청 위치 태하동 정함, 구역 울릉전도 죽도·석도관할

독도 일문일답

Q9.일본 1905년 시마네현고시 제40호 추진배경은 무엇, 고시는 국제법적 효력 가짐?

일본 사료 무성 당국자 “독도 망루 세워 무선 해저전신 설치 적함(敵艦) 감시상
유리”점 -> 독도 영토 편입 추진사실 기록○
. 독도 영토 편입 청원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독도 한국 영토 인식->, 일본 내무성 당국자 “한국령 여김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암초(독도) 얻어... 일본 한국 삼키려야심 있음-> 의심-> 득<실
언급 일본 정부 독도 한국 영토 인식정황 나타남

일본 1904년 2월 ‘한·일 의정서’ 러·일 전쟁 수행 ->자국 필요 한국 영토 자유사용 허가
1904년 8월 ‘제1차 한·일 협약’ 한국 정부 일본인 외국인 고문 임명 강요 등 한국
단계 침탈 진행 나감, 독도->첫 번째 희생물

시마네현고시 제40호 일본 우리나라 국권 단계적 침탈 과정 일환, 우리나라 오랜 기간
-> 확립 독도 영유권 침해 불법행위-> 국제법적 효력○

출처:<https://dokdo.mofa.go.kr/kor/dokdo/faq.jsp>

독도 일문일답

Q10.1906년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 독도 관한 보고내용 무엇?



1906년 3월 28일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 울릉도 방문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관민 조사단
일본독도 자국 영토편입 소식 -> 강원도 관찰사 내부(內部 안전행정부) 보고

보고서 호외 (報告書號外)

번역문

울도 군수 심흥택 보고서 내, 본군(本郡 : 울도군) 소속 독도 먼 바다
100여 리 4일(3월 28일) 진시(辰時 : 오전 7-9시)경
배 1척 울도군 도동포(道洞浦) 정박 일본 관리 일행
군청-> 말함 “독도 -> 일본 영토 됨
시찰차섬 방문”, ... 가구 수, 인구, 토지 생산량 물음
->인원 및 경비 물음 제반 사무조사 양
기록 보고-> 형편살핌 까닭 보고-> 살펴 봄.

출처:<https://dokdo.mofa.go.kr/kor/dokdo/faq.jsp>

독도 법령

-독도 지속가능 이용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 이용보전 · 관리 및 생태계보호 위하여 필요 사항 정함독도독도 주변 해역 지속가능한 이용이바지함 목적 <개정 2012. 2. 22.>

제2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① 국가 독도의 보전 · 관리 필요정책개발시행 <신설 2012. 2. 22.>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독도 지속가능 이용 정책추진-> 독도 독도 주변 해역 생태계보호해양수산자원 합리적 관리 · 이용 조화 균형이룸 <개정 2012. 2. 22.>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독도 독도 주변 해역 지속적 이용-> 독도 독도 주변 해역 생태적 균형파괴 가치 감소x.

독도 독도 주변 해역 자연환경 자연경관 파괴 · 훼손 침해 최대 복원 · 복구

제3조(정의) 이 법 사용 용어정의 아래<개정 2012. 2. 22.>

1. “지속가능 이용” 현재 미래세대 동등한 기회 갖음-> 독도 독도 주변 해역 이용 혜택 누림.

2. “생태계”독도 독도 주변 해역 생물공동체 무기적(無機的) 유기적(有機的) 환경 결합 물질계 기능계 말함.

3. “독도 주변 해역 해양수산자원” 독도 주변 해역 개발 · 이용 가능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국가경제 국민생활 유용 자원

4. “독도의용수비대” 우리 영토 독도 일본 침탈 수호-> 1953년 4월 20일 독도 상륙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 수비 업무 장비 인계->활동 33명 의용수비대원 결성 단체

출처:<https://www.law.go.kr/법령/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독도 관련 법령 -국유재산법

본문제3조(국유재산 관리 · 처분 기본원칙) 국가 국유재산 관리 · 처분-> 각 호 원칙 지킴 <개정 2011. 3. 30.>

1. 국가전체 이익 부합
2. 취득 처분 균형
3. 공공가치 활용가치 고려
- 3의2. 경제적 비용 고려
4. 투명 효율적 절차 따름

조문체계버튼 연혁

제4조(다른 법률 관계) 국유재산 관리 처분 관함 다른 법률 특별 규정o 이 법 정하는 바따름
다른 법률 규정 제2장 저촉경우 이 법 정함.

출처:<https://www.law.go.kr/법령/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독도 관련 법령 -어업자원보호법

제1조(관할수역) 한반도 부속도서 해안 좌 제선 연결함 조성 경계선 해양 어업자원 보호 관할수역(以下 管轄水域이라 稱함)함

- ㄱ.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 북위 42도15분, 동경 130도 45분의 점 선
- ㄴ. 북위 42도 15분, 동경130도 45분 점-> 북위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 선
- ㄷ.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 점->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 선
- ㄹ.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 선
- ㅁ.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 점-> 북위 32도, 동경 127도 점 선
- ㅂ.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 북위 32도, 동경124도의 점 선
- ㅅ.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 선
- ㅇ.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 (平安北道 龍川郡 薪島列島)마안도서단 선
- ㅈ. 마안도 서단-> 북 한만국경 서단 교차 직선

출처:<https://www.law.go.kr/법령/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독도 관련 법령

-무인도서 보전 관리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 무인도서 주변해역 보전 관리 필요 사항 정함-> 무인도서 주변해역 체계적 관리 공공복리 증진 이바지함 목적

제2조(정의) 이 법 사용 용어 뜻 <개정 2020. 2. 18., 2023. 8. 16.>

1. "무인도서"바다 둘러 만조 시 해수면 위 드러남 자연적 형성 땅 사람 거주(정착 지속적 경제활동 하는 것 말함. 이하 같다)하지 아니하는 곳 말함 다만, 다음 각 목 해당 사유-> 제한적 지역 사람 거주 도서 '무인도서'

가.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항로표지 운영

나.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1)항행 보조시설운영

다. 「수산업법」 적법한 어로행위 일시 거주

라. 군사상 목적 치안 주둔

마. 제16조 개발사업계획 승인 받음 무인도서 개발(거주시설 포함 개발 경우 개발공사 준공 전 해당

바. 관계 행정기관 허가 · 승인 받은 목적 수행

2. "주변해역"무인도서 만조수위선(만조수위선)부터 거리 1킬로미터 바다 「항만법」 제2조제4호 따름 항만구역 대통령령 정함 바다 제외 말함.

3. "간조노출지(간조노출지)"간조 시 해수면 위 드러남 만조 시 해수면 아래 잠감 자연적 형성 땅 말함

4. "영해기점무인도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1항 제2항-> 통상기선(기선) 직선 기선 인정 무인도서 국제법 -> 영해 폭 측정 기선 인정 간조노출지 말함

출처:<https://www.law.go.kr/법령/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독도 관련 법령 -어업자원보호법

제1조(관할수역) 한반도 그 부속도서 해안 좌 제선 연결함->조성 경계선간 해양 어업자원 보호 관할수역(以下 管轄水域이라 稱함)함

- ㄱ.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 북위 42도15분, 동경 130도 45분의 점 선
- ㄴ. 북위 42도 15분, 동경130도 45분의 점->북위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 선
- ㄷ.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북위 35도, 동경 130도 점 선
- ㄹ.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 선
- ㅁ.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 선
- ㅂ.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북위 32도, 동경124도 점 선
- ㅅ.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 선
- ㅇ.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平安北道 龍川郡 薪島列島)마안도서단 선
- ㅈ. 마안도 서단->북 한만국경 서단 교차 직선

출처:<https://www.law.go.kr/법령/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독도 일본 주장 실태



Thank you